



가

[2019. 3. 19.] [29625 , 2019. 3. 19.,]
() 02 - 2110 - 2735, 2110 - 2736

1

1 () 「 11 , 11 2 11 4 16
2 가 . 가
. < 2014. 11. 28.>

2 () . < 2012. 5. 14.,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1. " 가 "
2. " " 가 (" ")
3. " " 가 2 (" ") ,
4. " "
5. " "
6. " " 「 」 (" ") 11 4
가 . 가
7. " " 11 4 1 (
8. " " 11 4 1 (" ")
) 가 가 가,
9. " " , 「 」
10. " " 가 가
11. " " 가

12. " 가

13. " "

14. " , ,

15. " . .

3 () , 1

3 24 , 24 2 24 10 30 .

< 2014. 8. 12., 2017. 5. 8.>

1. 「 . 」 「 (" ") 가 「 (가 가)

2. 「

3. 「 가 42 가 ()

2 가 . . 가

1 가 .

4 () 가

. < 2013. 2. 22.>

1

, , 가 () . , .< 2013. 2. 22., 2014. 8. 12.,

2014. 11. 28.>

1. 가

가

2. 「 가 2 (" ") 가 2

가

가

「가

,

」가

가

.<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가

,

.

.

가

「

」

2

(

"

"

),

.

가

.

.

,

.

.< 2012. 5. 14.>

가

1

12

2

4

가

,

.

,

,

,

가

가

1

.<

2013. 2. 22., 2013. 3. 23., 2017. 7. 26.>

6

.< 2012. 5. 14., 2013. 2. 22., 2013. 3. 23., 2014. 8. 12.,

2014. 11. 28., 2017. 7. 26.>

1. 가

,

2.

(

)

3. 가

가

4.

5.

6.

7.

,

,

(2

)

[2012. 5. 14.]

5 ()

,

.

,

가

가

.

1

.

1

- 1.
- 2.
- 3.
- 4.
- 5.
- 6.

가

6 () 가
30

. < 2015. 8. 24., 2015. 12. 22., 2019. 3. 19.>

1. 가

2.

3. 가 가 가

가

4. , , 가
가

1

. < 2012. 5. 14.>

1. 가

2.

3.

4. • 가

5. • 가

6. 24 4

7.

11 2 2 1 가 가 ()

가

. < 2011. 3. 28., 2013. 9. 26., 2014. 11. 28., 2017. 5. 8.>

1.

2.

3. 가

4.

5. ()

6.

7. , 가 , 가

7 2.

8. 24 4
9. <2017. 5. 8.>
4 가
4 1 6 7 가
. 4 .<
2017. 5. 8.>
4 5
.< 2011. 3. 28.,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
7 ()
가 . , 24 4
1 1 (" ") 가
가 . < 2012. 5. 14.>
1 가
25 10 가 가
가 , 가 가
. .< 2013. 9.
26.>
. , 11
.< 2012. 5. 14., 2013. 9. 26., 2014. 8. 12., 2014. 11. 28.>
1.
1 2. 가
2. , .
3. 가 ()
가)
4. 6 4 8
5. .
6. . 가
7.
8. , 가
9.
10. <2017. 5. 8.>
11. ()
1)
, 4 7 1 3 가
가

8 10 .<

2012. 5. 14., 2013. 3. 23.,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3 16 1 가

2. 3 17 9

3. 3

4. 3

5.

6. 3

7. 가

8. 「 」 10

9. . .

10. 3 「 」 16 3

가

3 30 1

(" ") 가

가

「 」 16 6

가

가

.< 2019. 3. 19.>

가 (" 가 ") 1 가

가 (가 가) 가

6 4 5

6 1 가

가 가

.< 2011. 3. 28., 2017. 5. 8., 2019. 3. 19.>

가

10

7

2 가 가 1

, 4 5 . 1

3 .< 2011. 3. 28., 2012. 5. 14.>

25

1 가 3 3

.< 2012. 5. 14.>

8 (7 7 15

6 4 5 . , 7 8

2 (" ")

.< 2012. 5. 14., 2017. 5. 8.>

6 4 .

.<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7 「

」 2 3

1 .

.< 2019. 3. 19.>

3

9 (7

1 (

2)

.< 2014. 11. 28., 2015. 8. 24., 2017. 5. 8.>

1.

2.

3. .

4.

5.

6. .

7. .

8. 가

9.

10.

11.

12. , ,

. ()

. .

- 14.
15. 29 1 (" ")
16. 「 」, 「 」
- 17.
- 1
- 가
- 7 8
- 1 3
- 4
- .<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 1 • 2 (
-) 3 (「
- 」 2 3)
- 10 () 가
- . < 2012. 5. 14.,
2015. 8. 24., 2019. 3. 19.>
1. 가
2. • • •
3. 9 3 (" ")
- 가 ,
- 가
4. 가
- 1
- 11 () 가
- . < 2012. 5. 14.,
2014. 11. 28., 2015. 8. 24., 2016. 7. 22.>
1. 가

1. 2.
- . , 7 11 .
2. 가
- 3.
- 4.
5. 16 1 .
- 가 가
6. . 가 가
7. 24 가 가
- 가
8. 31 3 가
9. 가 27
10. 가 「
- 」 17 .
- 가
- 11.
12. 가
- 1 가
- .
- 1
- 1 2 4 , 6 8 , 11 12 .
- 11 2 .< [2015. 8. 24.>](#)
- 3 가
- 가 .
- 가 .
- 7 2 .
- 4
- 12 ()
- .
- ") , (" 가
- 」 18

(" ")가 .

가 . ,

.< 2011. 3. 28., 2012. 5. 14., 2013. 9. 26., 2014. 8. 12.>

1. .

2. 가

. 1 4 . ,

.< 2011. 3. 28., 2012. 5. 14., 2017. 5. 8., 2017. 7. 26.>

1. 가 :

2. :

,

5 (費目)

.< 2012. 5. 14.>

(

) , 2 . ,

.< 2012. 5. 14., 2013. 2. 22., 2015. 8. 24., 2015. 12. 22.>

4 , (" ")

.< 2012. 5. 14., 2013. 3. 23., 2015. 8. 24.>

5 2

.<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5. 8. 24., 2017. 7. 26.>

1. 14 가

2. 11 2 1

.< 2012. 5. 14., 2013. 3. 23., 2017. 7. 26.>

<2012. 5. 14.>

<2012. 5. 14.>

<2012. 5. 14.>

<2012. 5. 14.>

<2012. 5. 14.>

<2012. 5. 14.>

<2012. 5. 14.>

⑯ <2012. 5. 14.>

⑰ <2012. 5. 14.>

⑱ <2012. 5. 14.>

[2012. 5. 14.]

12 2()

, (" ")

가

. < 2013. 9. 26., 2014. 8. 12.>

8 1

(7 8)

8 1

12 5 (" ")

.< 2013. 2. 22., 2013. 9. 26., 2015.

12. 22., 2017. 5. 8.>

1.

가. 3 (가가) .

. 3 (가가) .

. 3 (가가) .

2. 7 8 가

3.

4. 20

5. <2017. 5. 8.>

12 1

.< 2014. 11. 28.>

4

4 30

12 4

1. 가
2. , 가가 「 」, 「 가가 」

3. .
- 12 4
- 12 5
- . ,
- .< 2017. 5. 8.>

- 1.
- 2.
3. 12 3 1

- 2
- 5
- [2012. 5. 14.]
- 12 3()
- . 14 가
- 12 5 (" "
-) . < 2013. 3. 23., 2015. 8. 24., 2017. 5. 8., 2017. 7. 26.>
- <2017. 5. 8.>

- 1
- , 19 2 (精算) .< 2013. 3. 23., 2017. 7. 26.>

- 2 .< 2013. 3. 23., 2017. 7. 26.>
- 4

- 19 2 3
- , 19 4
- .<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1.

2.

3.

4.

[2012. 5. 14.]

12 4()

") 가 ("

. < 2017. 7. 26.>

가

. < 2017. 7. 26.>

.

가

. < 2017. 7. 26.>

가

[2017. 5. 8.]

13 () 12 7 (" ") . <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30

. < 2013. 9. 26., 2015. 12. 22.>

가

. < 2012. 5. 14.>

.

1.

2.

3.

4.

,

. <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

2

. <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3. 9. 26., 2014. 11. 19., 2017. 7. 26.>

1. 12 7
 2. 19 12 2
 3. 32 3 가
 4. 2 가
 가 .
 .< 2017. 7. 26.>
 가
 .< 2017. 7. 26.>
 , .
 .< 2017. 5. 8., 2017. 7. 26.>
 [2015. 8. 24.]
 5 가 < 2014. 11. 28.>
 15 ()
 . 가
 45 가 .
 .< 2015. 8. 24.>
 1 .<
 2014. 11. 28.>
 1.
 2. <2017. 5. 8.>
 3.
 4.
 5.
 6. <2017. 5. 8.>
 7.
 8.
 9. 25 5 가 .
 10. <2017. 5. 8.>
 1
 16 1 가 1
 .< 2015. 8. 24.>
 3
 3 .< 2015. 8. 24.>
 1 가
 .< 2011. 3. 28., 2013. 3. 23.,
 2015. 8. 24., 2017. 7. 26.>

16 (가) ,
가 가 , 가(15 2 5
21 3) . ,
7 8 가 . , 가
가 가 . < 2014. 11. 28.>
가 가
가 1 가 가 .< 2012. 5. 14.>
가 1 가 가 ,
가 가 .< 2013. 9. 26.>
가 가 가
가 25 10 가 가
가 가 . 7 2
< 2014. 11. 28.>
1 가 ,
(가) 가
가 .< 2014. 8. 12., 2014. 11. 28.>
1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가 • 가 • 가 가
4 가 가 (가 가
) 가 .
6 1 가 가
. < 2019. 3. 19.>

17 (가) 16 1 가 가
 , 가

1. 가 가

2. 가 16 5 60 가

.< 2014. 11. 28.>

1. 가

2.

16 1 가 가

.< 2011. 3. 28., 2014. 11. 28., 2015. 8. 24.>

1. 가 가 10 , 가 90 (" ")

2. 가

3. 가

16 1 가 가

.< 2014.

11. 28.>

16 1 가

가

가

.< 2014. 11. 28.>

3

.< 2011. 3. 28., 2014. 11. 28.>

3

가

.< 2011. 3. 28., 2012. 5. 14., 2014. 8. 12.,

2014. 11. 28.>

1.

1 2.

2.

16 1 가 가

.< 2012. 5. 14.,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18 () 15 1 .
가
가 .<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
2014. 11. 28.>

1 3 ,
가 3
3 .< 2012. 5. 14., 2015. 8. 24.>
1. 15 2 7
: 3
2.
: 1 6
3. 가
: 1 6
4. : 1 6
2
15 1 . 9 4
. < 2011. 3. 28., 2014. 11. 28.>
2 4 2 4
25 3 가 .< 2017. 5. 8.>
[2014. 11. 28.]

6
19 () () 3 . <
2012. 5. 14.>

1.
2. . ,

1 .
,

.< 2012. 5. 14.>

1
2

.

, 1

2

.< 2011. 6. 24.,

2012. 5. 14.>

1. 12 2 3 2

2.

. , 11 1 2 4 6 8

3. 12 3 1

4 16 1 가 가
17 3

.< 2015. 8. 24.>

1 2

,

.< 2015. 8. 24.>

4 6

.< 2015. 8. 24.>

4 6

.< 2011. 3. 28., 2015. 8. 24.>

4 6 2 2 .

< 2011. 3. 28., 2013. 2. 22., 2015. 8. 24.>

1 .< 2011.

3. 28., 2013. 3. 23., 2015. 8. 24., 2017. 7. 26.>

25 5 가
2

. 가 가 .<

2012. 5. 14., 2015. 8. 24.>

1

2

12 2 2 9

.< 2015. 8. 24.>

1.

2. 가

2

.< 2015. 8. 24.>

2

.< 2015. 8. 24.>

3 < 2014. 11. 28.>

20 () 가 ,

· (試作品)

()

(" ")

.< 2012. 5. 14., 2014. 11. 28.>

가 ,

가

< 2014. 8. 12., 2014. 11. 28.>

,

.< 2015. 8. 24.>

11 3 1

가 .< 2014. 11. 28.>

(" ") 1 3

· (

) ,

(無償) .< 2014. 11. 28.>

1. 1 가

2. 2

11 4 1

· 가

·

.< 2014. 8. 12., 2014. 11. 28.>

1.

6

2.

9

4

3.

3

4.

가

[2014. 11. 28.]

21 (가)

(「

)

」 2 1

. < 2013. 9. 26., 2014. 11.

28., 2016. 7. 22.>

가

.<

2014. 11. 28., 2015. 8. 24.>

1.

2.

가

3.

가

가.

1

1

1

1

4.

가

5.

가

가

가

5

2

.< 2014. 11.

28.>

3

가

.< 2014. 11. 28.>

가

23 .<

2014. 11. 28., 2015. 8. 24.>

가

, 가

「

」 11

•

「

」 25

.< 2012. 1. 25., 2014. 11. 28.>

3

.<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20 2

가

.< 2014. 8. 12., 2014. 11.

28.>

8

.< 2014. 8. 12., 2014. 11. 28.>

「

」 35

가

가

.< 2015. 8. 24.>

[2014. 11. 28.]

4

22 () 11 4 1 ,

, 11 4 1
")

(" ,

.<

2012. 5. 14., 2014. 7. 21.,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5. 12. 22., 2016. 7. 22.>

1. : 10

2. : 20

3. (): 40

.< 2012. 5. 14., 2014. 8.

12., 2015. 8. 24.>

11 4 1

.< 2014. 8. 12., 2014. 11. 28.>

.<

2014. 8. 12., 2014. 11. 28.>

11 4 2

.

가

1

5

.< 2014. 8. 12.,

2015. 8. 24., 2019. 3. 19.>

,

.< 2014. 8. 12., 2015. 8. 24.>

.< 2015. 8. 24.>

23 ()

. 1 3

.< 2013. 9. 26.,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9. 3. 19.>

1. 5 :

2. 50 :

3. 10 :

4. 10 :

5. 1 4 :

(「 5 3 1

)

.<

2012. 5. 14., 2014. 8. 12., 2014. 11. 28.>

1. 22 1 :

2. 1 : , ,

, . .

2 1

3

.< 2014. 8. 12.>

1 2 .< 2014. 11. 28.>

<2012. 5. 14.>

<2014. 8. 12.>

6 30

.<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4. 8. 12., 2017. 7.

26.>

1 2

. , 1

20

2 3

1 2

1 4

.< 2012. 5. 14.,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8

「

」 2 6

8

.

< 2015. 8. 24.>

1 , 2 8

.< 2015. 8. 24.>

5 가

24 (가)

가

.

.

(가

)

. < 2011. 3. 28.>

가

가

.

.< 2011. 3. 28.>

1.

2.

3.

4.

2

가

,

6

가

.< 2011. 3. 28., 2012. 5. 14.>

가

가

.

.

가

24 7 2

가

.

.<

. <

2014. 8. 12.>

1. 가
- 2.
3. 가
- 4.

가

[2011. 3. 28.]

24 4()

. < 2014. 11.

28.>

1. : 가

가.

.

「 」 2 2 가

「 」 19 1 32 2 가

가

2. : 1

「 」 , ,
「 」 1 2 ,

[2011. 3. 28.]

24 5() 가 6 4 5

2

. < 2012. 5. 14., 2017. 5. 8.>

7 1

가 7 3 4

2

24 4 1 1

「 」 29
「 」 6 ,

. < 2014. 8. 12.>

[2011. 3. 28.]

24 6()
가

1

가

.< 2012. 5. 14.>

[2011. 3. 28.]

24 7()
24 4

가

24 4 1
2 4 .< 2014. 8. 12.>

9 1 14 2 4

< 2014. 8. 12.>

[2011. 3. 28.]

24 8() 15 2 7
24 5 24 6

. < 2014. 11. 28.>

16 1 가
4 가 1

.< 2014. 11.

28.>

[2011. 3. 28.]

[2014. 11. 28.]

24 9()

가

.<

2013. 3. 23., 2017. 7. 26.>

1

[2011. 3. 28.]

24 10()
가

24 7 24 7 2
가 가 가

9 1 14

[2011. 3. 28.]

25 () 가

가 26 가

가

. <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가

3 가

가 .<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가 .<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가 , 가 , 가 , 가

가

.< 2012. 5. 14., 2013. 9. 26., 2014. 11. 28.>

가 3 (가

가가) 3 가

30 가

가

4 가 가

.< 2012. 5. 14., 2017. 5. 8.>

5

가 가 .< 2015. 12. 22., 2017. 7. 26.>

<2015. 12. 22.>

<2015. 12. 22.>

가, 가

가

가

가

.<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1.

2.

3.

4.

5. 가

6. 가

가

가

.<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4

가

11

가

.

, , ,

• , , , , , ,

("

") (

)

.< 2012. 5. 14., 2013. 3. 23.,

2014. 11. 28., 2016. 7. 22., 2017. 5. 8., 2017. 7. 26.>

가

• • , •

.

.< 2014. 8. 12., 2014. 11. 28., 2016. 7. 22.>

1

.<

2011. 3. 28.>

1.

2. 가

3. 가

4.

5. •

⑩ 4

가

.< 2011. 3.

28., 2012. 5. 14., 2013. 9. 26.>

1.

8

1

,

8

1

•

,

15

1

•

16

1

가

•

2. 가 , 가 , 가
3. , , 가
4. , ,
5. ⑰ 4 1 가 .< 2011. 3. 28.>
- ⑱ 가 가 .< 2011. 3. 28., 2015. 8. 24.>
- ⑲ 5 가 .<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7. 7. 26.>
1. 가
2. (가)
3. 가
4. , ,
5. 가 , , , , , ,
6. ⑳ 10 가 가 .<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 ㉑ 10 가 .<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 ㉒ 13 14 .< 2011. 3. 28., 2014. 11. 28.>
- ㉓ 22 .< 2011. 3. 28., 2012. 5. 14., 2014. 11. 28., 2016. 7. 22.>
- ㉔ 23 .< 2011. 3. 28., 2012. 5. 14., 2014. 11. 28., 2016. 7. 22.>
- ㉕ 13 14 .<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 ㉖ 3 4 16 .< 2012. 5. 14.>

②7

• •

.

< 2014. 8. 12., 2014. 11. 28., 2016. 7. 22., 2017. 7. 26.>

26 <2016. 9. 5.>

6 가

27 () 11 2 1

4 2 . < 2016. 7. 22.>

<2016. 7. 22.>

<2016. 7. 22.>

11 2 1

가 가

6 4

5

4 2

.< 2013. 9. 26., 2015. 12. 22., 2016. 7. 22., 2017. 5. 8.>

11 2 1 4

4 2

가

가

.< 2015. 12. 22.>

11 2 1

가

.

.

가

가

.< 2012. 5. 14., 2013. 9. 26., 2015. 12. 22.>

1. (師弟) 「 」 777

2.

3.

4. 가 가

6

.<

2013. 9. 26., 2014. 8. 12., 2015. 12. 22.>

6

가

.

.< 2013. 9. 26., 2014. 8. 12., 2015. 12. 22.>

6

8

가

.

.< 2013. 9. 26., 2014. 8. 12., 2015. 12. 22.>

11 2 1

4

,

30

.< 2013. 9.

26., 2015. 12. 22.>

11 2 1

5

.

,

가

.< 2012. 5. 14., 2013. 9. 26., 2014. 11. 28., 2015. 12. 22.>

11 2 1

3

2

가

.< 2017. 5. 8., 2019. 3. 19.>

.< 2019. 3. 19.>

27 2() 11 2 1

4 2 2 가

, 5

.<

2015. 12. 22., 2016. 7. 22.>

1.

2.

3.

[2014. 11. 28.]

27 3() 11 2 6
15

1.

2. (10)

3.

4.

[2015. 8. 24.]

[27 3 27 4 <2015. 8. 24.>]

27 4(가) 11 2 7 가 ("
가 ") 6 .< 2015. 8. 24.>
1 가 27 6

가

.< 2015. 12. 22.>

[2014. 11. 28.]

[27 3 , 27 4 27 5 <2015. 8. 24.>]

27 5(가) 11 2 7
가 가

.< 2015. 8. 24.>

1

30

가

. ,

가

가

7

2

가

가

, 가

[2014. 11. 28.]

[27 4 <2015. 8. 24.>]

7

28 ()

1. 가
가

2.

3. 가

4.

5.

6.

7. .

8. .

9.

10. .

11. 가

28 2() 가

가 가 (4 3)

[2017. 5. 8.]

29 (.)

(" ") . <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1.

2.

3.

4.

3

.<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3

.< 2011. 3. 28.>

30 ()

.< 2014. 8. 12., 2014. 11. 28.>

1.

2.

3.

2

.<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3

.<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31 ()

30 3

28., 2013. 3. 23., 2017. 7. 26.>

1

가

1

2

(가

, 가

1

가, 가

, 12 7

.<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32 () 가 가

가

5 ,
3 . ,
.< 2012. 5. 14.,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6 4 5 6

2. , • 가 • •

3.

4.

(
)

5.

가

.< 2012. 5. 14., 2013.

2. 22., 2013. 9. 26.>

1. 가 6

2. 6 (, ,)

3. 1 2 가 6

가

33 () 가

, , 가

.< 2013. 3. 23., 2017. 7. 26.>

1 .< 2012. 5. 14., 2014. 11.

28.>

1. • • 가

2. • •

3.

4.

- 5.
- 6.
- 7.
- 8.
- 9.
- 10.

가

< 2012. 5. 14., 2013. 3. 23., 2014. 8. 12., 2017. 7. 26.>

1. 「 」 20 가
- 2.

.< 2015. 8. 24.>

33 2()
9 3
12 2 3 2

19 1 15 1 3 가
28.> .< 2014. 11.

가 1 11 2 1 1 16 1
7 5

, 27

<2015. 8. 24.>

<2015. 8. 24.>

[2012. 5. 14.]

33 3 <2015. 8. 24.>

33 4()
가

- 1.
2. 가 (産業群)

1
6 1
(")
7 3
1.
2. : 50
: 20
16 1
가 , 가
가 16 1
가 가 .< 2014. 11. 28.>
16 1
가 17 4
7 5 27
1.
2. 가
6
가 6 1
7 1
9
9 2
.
.< 2014. 8. 12.>
[2013. 2. 22.]
[33 4 33 5 <2013. 2. 22.>]
33 5(가)
가 가 . 가, 가
가
.< 2013. 3. 23., 2016. 9. 5., 2017. 7. 26.>
[2012. 5. 14.]
[33 4 <2013. 2. 22.>]

33 6() 가 「 19 1 4 가 . < 2014. 11. 28.>

28.>

1. 7
2. 9 10
3. 16 가
4. 19
5. 22
6. 25
7. 27
8. 31

[2014. 8. 12.]

34 () 14 6 가
() . < 2017. 5. 8.>
1 .< 2017. 7. 26.>

[2015. 8. 24.]

35 () 27 4 1 6
가 2015 1 1 3 (3 1
1) . < 2015. 8.

24., 2017. 7. 26.>

[2014. 11. 28.]

< 29625 ,2019. 3. 19.>

1 () 2019 9 1 . , 6 1 , 7 4 •
6 • 7 , 8 3 , 10 1 , 16 7 , 22 7 , 23 1 , 27
12 • 13 , 32 2 , 1, 1 3 4 2

2 () 6 4 , 7 , 8 3 ,
9 1 1 3 가

3 () 12 2, 12 4, 12 5 2
1 4 .

4	(		)	15	2	10			
		가		.					
5	(		가	)	16	7			1
			가			.			
6	(			)		19	4	•	12
									15
								.	
7	(		)	23	1				1
							.		
8	(		)	32	2				1
			가			.			
9	(		가		)		1		1
			가					.	
10	(			)		2			
					.				
11	(			)					
		2	2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19. 3. 19.>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7조제10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 4) 삭제 <2012.5.14>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학·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1)·3)·4)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2] 삭제 <2012.5.14>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3] <개정 2019. 3. 19.>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7조제10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 나. 최근 3년 이내(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 다.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마.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 바.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 사.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협약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

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4] <개정 2017. 5. 8.>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17. 7. 26.>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비 목	세 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 접 비	인 건 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중 6개월 이전에 구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장비·재료비	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 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연구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법제처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연구과제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법제처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4.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 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 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원·출자금:

법제처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합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개정 2017. 5. 8.>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제19조제9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담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이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2. 부담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3] <개정 2015.12.22.>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 지급기준 (제23조제8항 단서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 <개정 2014.11.28.>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24조의7제2항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전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조치·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갱신·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 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성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침단장비의 설치·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저장·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 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삭제 <2012.5.14>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17. 7. 2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제25조제22항 관련)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및 신품종 중 정보
-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및 신품종 중 식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의 전자원문
- 4)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5) 기술요약정보: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질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 8) 신품종 중 정보: 생명정보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 3) 신품종 중 식물: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마. 연구개발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차실적 보고 및 연구개발 종료 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등록한다.

나.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등록·기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외에 등록·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2] <개정 2019. 3. 1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27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4호의2·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	3년 이내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제1항제8호	2년 이내

나.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법제처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58
1) 정당한 절차 없(가) 국내로 누설·유출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나) 해외로 누설·유출	제1항제2호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개정 2016. 7. 22.>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11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 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15.12.22.>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27조의4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증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삭제 <2015.12.22.>

다.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전문기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조사 과정 중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